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

- Tops 노블레스 종류형 주식투자신탁 1 호
- 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 호
- BEST 모아모아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 호
- Tops e 주식투자신탁 1 호
- Tops 프리미엄 주식투자신탁 1 호
- 미래든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 호
- Tops 아름다운 종류형 주식투자신탁 1 호
- Tops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 호
- BEST 알부자 적립식 혼합투자신탁 1 호
- BEST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1 호
- Tops Easy Trading 시스템 혼합투자신탁 1 호
- Tops 씨리얼 적립식 배당 혼합투자신탁 1 호
- Tops 적립식 혼합투자신탁 1 호
- SH Tops Life 퇴직연금 성장 주식투자신탁-모

2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	변경사유
제 38 조 (운용제한)	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(생략) 다.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(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액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나눈 비율을 3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년 3월·6월·9월·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월간 적용한다.	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(생략) 다.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(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액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.	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제 26 조 개정규정

3. 변경 시행일

2006년 7월 1일